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9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 정춘숙·박용진·송옥주

유동수 · 임종성 · 송갑석

김철민 · 서삼석 · 박찬대

권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소 득을 보장하고 있음.

2015년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으나, 연계가입자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적용하여 각 연금제도내 가입자와 제도 이동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공무원·사학 등 직역 재직기간을 합산하려는 경우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여 이동하려는 직역기관에 반납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공적연금 제도이동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급여 수급권 충족요건인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직역 재직기간 합산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역 재직기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정을통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자 포함)가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 급여수급자가 연계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나. 연계의 신청은 「국민연금법」이나 직역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며, 중단된 시효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계신청을 취하하거나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 다.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계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으로 함(안 제10조, 제16조 제3항제1호·제2호,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 라. 연계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각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2제2항 신설).

마. 운영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적연금연 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사 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안 제22조 삭제 및 제2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연금가입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 또는 직역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국민연금법 제61조 및 제77조에 따른 급 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제3장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① 제8조에 따른 연계의 신청은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계신청을 취하한 때 및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20년"을 각각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20년"을 각각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년"을 각각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6장의 제목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를 "공적연금연계협의 체 및 심사청구"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적연금연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에 관한 적용례 등) 제1 0조,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2016년 1월 2일 이후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으로이동하여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행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 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 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 또는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 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 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 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 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국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 민연금법 제61조 및 제77조 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아 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2. (현행과 같음) 2. (생략) ② ~ ⑥ (생 ② ~ ⑥ (현행과 같음) 략) 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 <신 설> 효 중단) ① 제8조에 따른 연 계의 신청은 연금법에 따른 급 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 저 직연금의 수급권자) ① 제8조 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u>20년</u> 이상이고 65 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 권이 생긴다.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65세를 넘어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늘어나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②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②

청을 취하한 때 및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
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세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
직연금의 수급권자) ①
<u>10</u> 년(「군인연금법 <u>」</u>
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
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는 20년으로 한다)
<u>.</u>
2
<u>10년</u>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
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
다)

느 제8조제/하에 따라 여게시

(생 략)

- ③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때「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 저급) ①·② (생략)
 - 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 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 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1. 연계기간이 <u>20년</u> 이상인 자 가 65세가 된 날

2.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3. • 4. (생략)

④ (생 략)

-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연금법을 준용하여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 1. 65세가 되었으나 연계기간
 이 20년 미만인 경우(다만, 6
 5세가 된 연계신청자가 제10
 조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

<u>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u> -
2
<u>1</u> 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
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는 20년으로 한다)
3.·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
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①
<u>.</u>
1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
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

거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 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는 제 외하다)

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② (생략)

보험료 등의 처리) (생 략)

<u><신</u> 설>

제6장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

제22조(연계급여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연계급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 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u>년으로 한다)</u>	

2. 연계기간이 20년 미만인 상 2. ----- 10년(「군인연금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 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 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 보험료 등의 처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 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한다.

제6장 공적연금연계협의체 및 심사청구

<삭 제>

- 2. 연계급여에 관련된 주요 사<u>항</u>
- 3.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

 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연금관리기관의 소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연계급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연계급여 및 연계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연금법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 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적연금연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적연금연계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